

외국인 신·편입학 학생에 관한 규정

개정 2021.01.22., 2023.08.18., 2024.05.02.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해전대학교의 외국인 신입학 및 편입학 학생에 관한 학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‘외국인신입학생’(이하 ‘유학생’이라 한다)이라 함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
2. ‘외국인편입생’(이하 ‘편입생’이라 한다)이라 함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로 편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입학)

- ① 유학생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충족되는 자를 선발한다.<개정 2021.01.22.>
1. 국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,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자
 2. 부모와 본인 모두 외국인인 자로서 아래 사항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
(단, 나, 다, 라, 마, 바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수 1년 이내에 한국어 연수 300시간을 필수로 이수 하여야 한다.)<개정 2023.08.18., 2024.05.02.>
 - 가.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(TOPIK)3급 이상을 취득자.<개정 2023.08.18>
 - 나.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(TOPIK)2급 이상을 취득자.<개정 2023.08.18>
 - 다. 정규대학 한국어교육기관 3개 학기 이상 이수(수료)한 자.<개정 2023.08.18>
 - 라. 정규대학 한국어교육기관 한국어 3급 과정 이수(수료)한 자.<개정 2023.08.18.>
 - 마.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한자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취득한 자<개정 2024.05.02.>
 - 사.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중급1 과정 이상 이수한 자<개정 2024.05.02.>
 3. 제1호와 제2호를 충족하고 본교 입학사정회의에서 통과된 자

② 편입생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충족되는 자를 선발한다.

1. 외국대학에서 1년 이상 수학한자로 한국어교육과정을 편입할 학과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한 자
2. 부모와 본인 모두 외국인인 자
3. 제1호, 제2호에 충족하고 본교 편입학사정회의에서 통과된 자

제4조(학사) 유학생과 편입생은 본교 ‘학칙’ 및 ‘학칙시행세칙’에 따른다.

제5조(등록금 및 장학금)<개정 2021.01.22.>

- ① 입학이 허가된 유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유학생은 본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, 한국어능력 시험(TOPIK) 및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. 필요시 총장은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6조(기숙사) 신입학 및 편입학 학생은 반드시 입학 후 1년 이상 본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것을 권장 한다.<개정 2021.01.22.>

제7조(학생상담 및 진로지도) 정기적인 외국인 학생의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업 및 생활 등에 관한 고충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, 진로지도 교수를 배정하여 외국인 학생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다.

제8조(취업지원) 건전한 시간제 취업(아르바이트)을 알선하여 유학생 등이 취업을 위해 학교를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,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여 한국 유학 선호도를 제고하고, 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사전교육) 학교시설 이용과 교내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 별도의 안내교육을 실시하고, 국내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0조(신·편입학생의 권리와 의무) 신·편입학생은 학칙과 제 규정에 따라 본 교 재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제11조(학생보험) 신·편입학생이 교내에서 각종 상해 사고 시 학교가 정한 상해 보험 약관(학생팀)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,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본교에서 권장하는 유학생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.<개정 2021.01.22.>

제12조(준수사항)

- ① 신·편입학생은 본교에서 수학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1.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.
 2. 신·편입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.
 3. 소정의 유학기간이 종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국으로 귀국한다.

- 4.국내 체류기간 및 출입국에 발생하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.
- 5.본교에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본교 상벌규정에 따르며, 조기 귀국시킬 수 있다.
- 6.재학기간 중 거주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사실을 소속 학과 및 관련 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7.본교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중 TOPIK 2급 이하 소지자 또는 TIPIK을 취득하지 않는 학생은 입학 후 소정의 한국어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.<개정 2021.01.22.>

제13조(변동신고)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의거 외국인학생의 변동사실을 인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다.

제14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1.2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08.1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2024.05.0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첨1><삭제 2021.01.22.>